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09.02.04
개정(1) 2014.11.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서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만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를 받는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에 또는 투자자문자산, 투자일임자산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함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승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경우 관련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 ①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결정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등)

- ①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공시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을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을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같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변경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4년 11월 26일

항목	현재	개정(안)	비고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p>④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u>100분의 5</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u>100분의 5</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u>100분의 1</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u>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u>에서부터 <u>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u>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u>100분의 2</u>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법시행령 개정 반영
제10조(공시 등)	<p>①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을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p>	<p>①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u>상품개발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공시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담당부서는</u> 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을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u>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을</u>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p>	업무 담당 명확화
부칙 2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